



• 때 : 1992. 4. 8 • 곳 : 특허청 조사과 • 대담자 : 특허청 조사과장 황의창 · 본회 자료홍보과장 정진우

특별대담

“영업비밀 보호제도 어떻게 되어가나”

탈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급진적인 산업화 사회로의 이동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생산기술, 판매전략 등의 노하우에 대한 보호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사과장께서 최근의 기술 등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에 관한 국내외적인 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최근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으면서 기술과 자본, 그리고 판매의 노하우 등 사업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각국들은 세계경제의 주도권 장악을

목표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안으로는 신기술 확보에 혈안되어 있고 밖으로는 자국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의 이전 기피 등 후진국의 기술개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세계경제를 석권하기 위하여 미래성장 기술인 생명공학, 신소재산업, 정보통신산업, 전자기술에 대한 선진국간,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움직임이 노골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후진국의 기술지원 제도에 대한 규제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요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IBM과 독일의 지멘스간의 컴퓨터 칩에 관한 미·독 동맹체결이라던가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이 독일의 다이클러벤츠 그룹과 제휴하여, 일·독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 등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의 분할점거를 노려 전략적인 연대체제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결과적으로 라이선스(Licence)에 의한 실시권 許與나 기술이전보다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나 컨소시엄(Consortium) 쪽으로 가는 등 기술·자본의 지배형태로 나아가

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큼니다.

최근 營業秘密의 침해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지요?

탈 냉전시대를 맞으면서 급진적인 산업화사회의 이동에 따라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중화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 그리고 판매의 노하우로 무장한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산업스파이, 경쟁기업체의 기술 노하우 등을 탐지하기 위한 부당스카웃, 종업원 등 내부인에 의한 기술정보 유출사건으로 기업간의 분쟁이 무척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서, 1987년 4월 T제약이 1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X선 조영제 「바리탐」의 제조기술 관련 서류와 판매관련 영업장부를 이 회사의 개발이사로 있던 K씨가 S제약회사로 전직하면서 동 서류를 유출한 사건이나, J국의 M상사 한국주재원 B씨가 P제철에 업무차 방문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대외비 기밀문서인 「1984년도 실행생산계획서」 1권을 서류가방에 몰래 넣고 나와 복사한 다음 이를 J국으로 보내려다가 김포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등이 속출되고 있고 이와 같은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사건은 앞으로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나라마다 또 기업마다 營業秘密보호에 관한 비상이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같은 재벌은 자그마치 200억弗을 들여 전세계에 뻗어있는 「계열회사—소비자—공

급자」를 연결하는 국제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첨단 컴퓨터 관리체제 단계로 들어갔고, 미국의 「카터필러」같은 회사는 모든 해외와의 교신을 「암호」로 하고 있으며, 듀폰은 전직 FBI의 방첩책임자를 고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정부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기업의 기술정보 등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1991년 12월 31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입법을 직접 담당하셨던 조사과장께서 입법배경과 그 취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외국의 경우도 소개하여 주십시오.

최근 급속한 기술혁신과 경제사회의 소프트화, 정보화경향에 따라 소위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營業秘密 정보가 대량생산되고 거래 또한 활발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기술력이나 영업력의 향상으로 고용인구의 이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관리와 유출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Intellectua



황 의 창 과장

l Property)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이 GATT/UR 등의 국제교섭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어 營業秘密에 대한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가 완벽하지 못하고 다만, 민법이나 상법, 형법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요 외국의 營業秘密에 관한 보호법제를 살펴보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초경부터 보통법(Common Law)에 의한 판례를 중심으로 보호하여 왔으나, 미국의 경우는 1979년에 이르러 모델법인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을 제정하여 1990년 5월 현재 32개 주에서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속에 營業秘密 보호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고, 더우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홍콩,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등에서까지도 영·미의 Common Law법리를 바탕으로 판례에 의하여 營業秘密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I

njunctive Relief)을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營業秘密이란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이 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營業秘密이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업이 개발, 축적한 기업특유의 정보로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 또는 경영상의 정보의 총칭으로서 통상 우리에게는 노하우(Know How)나 기업비밀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트레이드 시크리트(Trade Secret), 재산적 정보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위 산업스파이가 노리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들이 營業秘密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생산기술, 제조설비, 각종 설계도, 공장 메뉴얼, 제품규격, 연구개발 데이터(실폐한 데이터 포함), 성분원료의 배합비, 고객의 명부, 원재료 구입처 리스트, 재무 데이터, 판매 메뉴얼, 재고관리정보, 신규사업 계획정보 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에 있어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경우에는 營業秘密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營業秘密 침해행위가 됩니까?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상 부정행위의 특수한 형태인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6가지로 유형화하여 규정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절취, 기만, 협박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외부인의 영업비밀 탐지행위와 기업체 종사원 등 내부인에 의한 營業秘密 누설행위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이 기본 유형의 침해행위에 따르는 사후적 관여행위를 각각 두가지씩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인에 의한 탐지행위나 내부인의 비밀누설행위 또는 제3자와 내부인과의 공모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營業秘密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또한 부정한 탐지행위나 비밀누설행위를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 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고 등에 의하여 알게된 후부터(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후부터) 당해 營業秘密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營業秘密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습니까?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개개의 구체적인 營業秘密 침해행위가 민사상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토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 등의 폐기, 제거 청구권 등 사전적 구제수단을 두어 營業秘密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營業秘密 보유자의 신용회복 청구권 등 사후적 구제수단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營業秘密 보호수단에는 민사적 구제수단 이외에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營業秘密의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업체의 중업업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기업특유의 생산기술을 경쟁기업체에 제공하는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營業秘密 보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까?

기업은 우선 다음과 같은 영업비밀의 보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제3자 등 외부에 이미 알려져 있는지 세째, 영업비밀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네째, 영업비밀 보호로 얻게 될 이익과 누설

로 잃게 될 손해를 비교 형량하며 다섯째, 영업비밀로 분류할 경우 그 보호의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영업비밀을 비밀의 정도에 따라 I급, II급, III급 등으로 분류하고 영업비밀 취급자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가하며,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를 명백히 하고 영업비밀 보관용기를 특정하고 2중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며 영업비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영업비밀의 출납을 명확히 기록하여 항상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에 관한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기업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취업 규칙이나 고용규칙 등에 종업원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계약이나 경업 금지의무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사시는 물론 퇴사시 또는 경쟁기업체 취업시 보직에 유의토록 하는 통보문을 보내 신규 또는 전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영

업비밀 보호관리에 대한 부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외부인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내부인의 누설로부터도 보호하도록 기업인의 윤리관을 확립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시행당시 취득, 사용하고 있는 營業秘密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은 공포일(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1992년 12월 31일) 내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에 있었던 營業秘密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에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서도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비교적 익숙하지 못한 營業秘密의 법적 개념과 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여 입법 취지를 벗어난 권리주장으로 인한 濫訴

등 법 운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법의 정신을 잘 파악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대책은 물론 타사로부터도 營業秘密 침해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어전략도 아울러 마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사는 자사의 특성에 맞는 법적 정보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여 취업규칙이나 營業秘密 관리규정, 기술도입계약 취급규정, 營業秘密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등의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의 수단으로서의 사원계약, 고용규칙 등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므로써 營業秘密 보유자의 권리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Guide Line) 내지 판례연구 등을 위하여 산업계는 물론 정부나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의 상호협력이 크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